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1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우종혁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8. 3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층의 교육, 취·창업훈련, 구직 등을 지원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및 운영, 시설의 위탁(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조례안 예고 : 2023. 8. 21. ~ 8. 25.(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강남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취업 지원 사업)과,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안 제7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상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의 경우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와 업무가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여러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소규모일지라도 강남구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 긍정적인 수 있음.
- 또한, 지역적 접근성과 차별화된 강남형 중장년 취·창업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과정 등이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2023년 연말 리모델링 완료 예정)라는 정책사업명으로 준비 중에 있어 이 정책사업의 근거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하나, 향후 보완 및 검토되어야 할 입법과제로는 △중장년 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생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사용료) 면제 또는 징수여부, △수강지원생이 증가할 경우, 선발 우선순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11호

제안일자 : 2023.8.31.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향후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직업 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생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입법과제와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5조)
- 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및 사용료 관련 사항 신설(안 제9조, 제10조)
- 일자리 “지원” 용어의 명확화(안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시장”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한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수강생 선발 시 제1항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순위를 적용한다.

1.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적극적인 강남구 중장년 직업 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한다.

안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을 “(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사업” 을 “교육·상담사업”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한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경험 및 인턴십 사업
5. 창업 상담과 교육
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수강생 선발 시 제1항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순위를 적용한다.

1.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적극적인 강남구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

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